第262回國會
(定期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9 號(附錄)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年12月7日(木)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제안설명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6. 12. 7
제 안 자 : 김한길 의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6. 12. 7
제 안 자 : 김기현 의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를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6. 12. 7
제 안 자 : 문병호 의원

제안 이유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와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중복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되는바, 이 경우 다른 법률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않고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만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동일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이 동시에 제출된 때에는 제2항의 인사청문회는 제1항의 인사청문회로 갈음한다. 다만, 제1항의 인사청문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함(안 제65조의2제3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6. 12. 7
제 안 자 : 임종인 의원

제안 이유

군의 주요 직위자인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국군 최고위급 직책으로서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국가안보 유지, 주요 국방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에 대한 국회의 국민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방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군 인사의 경우 재임 중 지휘권의 확고한 보장을 통하여

소신 있는 지휘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군의 주요 직위자인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은 국회인사 청문을 거친 후 임명함(안 제6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인 의원의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 : 2006. 12.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현재 김한길 의원, 김기현 의원, 문병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계류 중이며, 그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한 번만 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사청문회만 열고, 별도로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열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1]을 거치도록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이 본회의[2]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65조의제2항을 함께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 국방개혁기본법안 제13조

2)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2006. 11. 30)에서 수정의결(제명을 국방개혁법안으로 변경)하여 제16차 본회의(2006. 12. 1)를 통과함.